

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645
----------	------

2021년 9월 10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년 08월 11일 박기재 의원 외 14명
2. 회부일자 : 2021년 08월 18일
3. 상정일자 :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
【2021년 9월 8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(박기재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식품안전기본법」 제5조의2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과 관련하여 기념행사와 더불어 식품안전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.
- 이에 근거해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명시해, 시민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. (안 제9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식품안전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참조)
- 다. 기타사항 : 신·구 조문대비표 참조

Ⅲ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개정안의 취지

- 본 개정안은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하였음.

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- 개정안은 상위법인 「식품안전기본법」 제5조의2¹⁾를 반영한 것으로 시장이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을 운영할 수 있고,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임.

<표>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9조의2(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) ① 시장은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 제5조의2에 따른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

1) 「식품안전기본법」 제5조의2(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) 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및 사업자의 인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하며, 매년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한다.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,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현행	개정안
	<p>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식품안전의 날에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,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</p>

- 「식품안전기본법」이 일부 개정되어(21년 7월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과 관련하여 기념행사와 더불어 식품안전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 관련 사업 및 활동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 바 있음.
-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, 매년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지정하여 매년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.
 - 식품안전의 날은 2002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,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, 식품 관련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음.
 - 매년 5월은 온도가 높아지는 시기로 기온 변화로 인한 식자재의 변질가능성이 높으며, 식품 보관, 섭취, 개인위생에 관한 관

리 부주의 등으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임.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해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한 바 있음.

-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의 날과 관련된 행사를 주최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올바른 정보를 알림으로써 시민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주의 환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의미를 가진다고 사료됨.

3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「식품안전기본법」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명시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해 시민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시민들의 보건의식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적 취지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.
- 본 개정안을 통해서 식품안전의 날과 식품안전주간을 개최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가 확보되는 만큼 향후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,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기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64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1일

발 의 자 : 박기재, 권수정, 김경영,
김경우, 김소영, 김제리,
김호진, 김화숙, 문병훈,
오한아, 이병도, 이영실,
이정인, 정진철, 조상호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식품안전기본법」 제5조의2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과 관련하여 기념행사와 더불어 식품안전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.
- 이에 근거해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명시해, 시민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. (안 제9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식품안전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) ① 시장은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 제5조의2에 따른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식품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,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9조의2(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) ① 시장은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 제5조의2에 따른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년을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식품안전의 날에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,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
문서번호	2021080800000002
------	------------------

미첨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보건복지위원회	담당 :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이혜린 예산분석관
접수일 : 2021.08.08	
회신일 : 직접입력	내용문의 : 02-2180-7955

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의2제1항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제9조의2제2항에서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≙ 17,500천원

-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17,500천원으로 연평균 3,500천원임

- 추계의 전제

- 식품안전의 날 행사 비용은 서울시 시민건강국 유사사업을 참조하여 연간3,500천원 비용 산출

※어린이 날 행사운영비 2,500천원

크리스마스 행사운영비 3,000천원

결핵의 날 행사운영비 5,000천원

- 추계기간 동안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는 연1회 시행하는 것으로 전제

-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≙ 17,500천원 (연평균 3,500천원)

- 총 비용 = 식품안전의 날 행사비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합 계
세입	-	-	-	-	-	-	-
	소계 (a)	-	-	-	-	-	-
세출	제9조의2제2항 (식품안전의 날 행사비용)	3,500	3,500	3,500	3,500	3,500	17,500
	소계 (b)	3,500	3,500	3,500	3,500	3,500	17,500
	총비용 (b-a)	3,500	3,500	3,500	3,500	3,500	17,500

주1: 식품안전의 날 행사비용은 서울시 시민건강국 유사사업의 행사비용 준용

$$\begin{aligned} \bigcirc \text{식품안전의 날 행사비용} & \simeq 17,500\text{천원} \\ & = 3,500\text{천원} \times 5\text{년} \end{aligned}$$

※참고) 서울시 시민건강국 유사사업을 참조하여 연간3,500천원 비용 산출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 조도형
추계세제팀장 이원상
주 무 관 이혜린
☎ 02-2180-7955
e-mail : lovelyynn91@seoul.go.kr